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 결 사 항	
------------------	--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10. 6.

#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10. 6.

제 출 자: 고성군수

## 1. 제정이유

당항포관광지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항포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운영시간, 이용료, 이용료 환불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6조)
- 다. 이용제한, 시설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나. 예산조치: 2024년 당초예산 확보 계획
- 다. 합 의
  - 1) 기획예산담당관(예산담당): 예산합의 완료
  - 2)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34371(2023. 9. 4.)]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3-1374호

가) 예고기간: 2023. 8. 25. ~ 2023. 9. 14.(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붙임

#### 4. 본문: 붙임과 같음

##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당항포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당항포관광지 내 「관광진흥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부대시설을 포함한다)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도록 조성한 유원시설의 명칭은 고성군 당항포랜드(이하 “당항포랜드”라 한다)로 한다.

② 당항포랜드는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 일원에 둔다.

제3조(운영시간 등) ① 당항포랜드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이용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당항포랜드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항포랜드의 이용 활성화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매표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 당항포랜드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이용료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이용료의 처리)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고성군 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다음날이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입해야 한다. 다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당항포랜드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시설물 이용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8조(위탁관리) 군수는 당항포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 당항포랜드 이용료(제4조 관련)

구 분		이용료(원)	비 고
바이킹	소인	4,000	- 유아: 4세이하 - 소인: 5세이상~12세이하 - 성인: 13세이상
	대인	4,500	
범퍼카	소인	4,000	
	대인	4,500	
우주전투기	소인	4,000	
	대인	4,500	
슬라이딩카	소인	4,000	
	대인	4,500	
공룡열차	소인	4,000	
	대인	4,500	
아스트로	소인	4,000	
	대인	4,500	
범퍼보트	소인	6,000	
	대인	8,000	
	보호자+유아	8,000	
회전관람차	소인	4,000	
	대인	4,500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관련 조문

- 제1조(목적):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 나. 비용발생 요인: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1) 사업대상: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 2) 사업규모: 당항포랜드 가설 건축물 2동, 유기시설 8종
  - 세입: 위탁비 37,000,000원
  - 세출: 수선비 10,000,000원

##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입	40,000	45,000	50,000	55,000	60,000	250,000
세출	10,000	15,000	20,000	20,000	30,000	95,000

## 다. 재원조달방안: 고성군 자체재원(균비)으로 조달

**작성자: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 참고

##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0.>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